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428
------	------

제출일자 : 2023. 11.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금천구민의 직장운동경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포터즈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8조)

마.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2023. 10. 11. ~ 2023. 10. 31.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체육 관심도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포터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서포터즈의 활동 내용 및 예산 등을 관리한다.

제4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홍보 및 지원활동
2.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 및 대회 등에서의 응원 및 지원활동
3.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행사 및 이벤트 지원 등

제5조(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로 서포터즈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서포터즈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서포터즈의 교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단체복, 응원도구, 홍보물 등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서포터즈 활동규칙) 서포터즈는 자율적으로 활동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활동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포터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에 위촉된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포터즈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경비가 연평균 1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3억 미만인 경우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김주일
연 락 처	2627 - 1463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8. 21.] [법률 제19479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0. 12. 8.>